

코로나-19, 해외입국자에 대한 대응조치

2021. 3. 5 (금) 기준

* 아래 사항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, 중앙 방역 대책본부 홈페이지, 서울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검역대응 절차

구 분		검역조사 절차
유증상자 (내국인, 외국인 모두 포함)		1. 진단검사 실시(공항 내 임시대기시설) 2. 판정 결과 · 양성)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· 음성) 내국인, 장기체류 외국인 : 자가격리 / 단기체류 외국인 : 시설격리
무증상자	내국인, 장기체류 외국인	1. 자가격리 실시(14일, 의무적) 2. 입국 3일 이내 진단검사(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수행) 3. 판정결과 · 양성)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· 음성) 자가격리 지속
	단기체류 외국인	1. 공항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실시(임시생활시설 입소) 2. 판정결과 · 양성)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· 음성) 시설격리 ☞ 시설격리 이용료 기준 1일 최대 15만원 (시행 2020.06.23.)
격리 면제 대상자 * A1(외교), A2(공무) 또는 입국 전 한국 대사관 에서 '격리면제서'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		1. 공항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실시(임시생활시설 대기) 2. 판정결과 · 양성)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· 음성) 능동모니터링,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
특이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 확대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세계 출발 내국인대상 출발일기준 72시간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- 단,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 제외 - 미제출 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(비용 자부담) ○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국, 남아공, 브라질, 아프리카 외 입국자: 입국후 1일내 관할보건소에 진단검사 실시 ○ 2021.2.24.(수)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CR 음성확인서 언어 : 국문, 영문본 제출 필요 - 기타 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공증 후 제출 요망 ○ 모든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후 PCR검사 3차례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국 출발 72시간 내, 입국 1일내, 격리해제 전 ○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중도 출국 제한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변경 전) 입소자 희망 시 중도 출국 허용 - (변경 후) 98부터 입소자 중도 출국 불허 ※ 단 출발 또는 귀적 국가로의 중도 출국에 대해서는 출국 사유건강 상 이유, 가족의 임종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등에 대해 시설 단장의 판단 하에 예외적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원 조기 최소 및 출국출항은 기준과 동일하게 허용 ○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최고 10만원

■ 해외에서 입국 시 이동안내(서울 거주자 한함)

* 출처 :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

① 자차 이용안내

<p>자치구별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</p>	<p>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</p> <p>* 여권, 항공권 지참</p>	<p>진단 검사 후 바로 거주지 이동</p>	<p>14일간 자가격리!</p> <p>*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필수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② 특별수송택시 이용안내 (이용료는 자부담 6만 5천원~13만원, 구역별 정액요금, 24시간 운영)

<p>서울택시 안내데스크에서 접수 후 차량배차</p> <p>▶ T1은 12~13번 게이트 중간 ▶ T2은 2~3번 게이트 중간</p>	<p>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</p> <p>* 여권, 항공권 지참 * 당일검사가 어려울 경우, 예약 후 익일검사</p>	<p>승객 검사 후 특별수송택시 재탑승</p> <p>* 배정된 택시는 검사 종료시까지 기다립니다.</p>	<p>자택 이동 후 14일간 자가격리!</p> <p>*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필수</p>
--	---	--	---

③ 특별수송버스 이용안내 (이용료 : 16,000원)

<p>입국 수속 후, 인천공항 T1(1층), T2(지하1층) 대합실 이동</p>	<p>노선확인 및 탑승 신고서 작성</p> <p>▶ 탑승신고서는 각 구청에 통보, 진단검사 및 자택 이동 등에 활용 (하차이후에 거주지 이동할 자차없는 부득이한 경우, 구청차량 요청가능)</p>	<p>버스탑승 및 자치구별 하차지(보건소 선별진료소) 로 이동</p>	<p>구청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진단검사 후 거 주지로 이동</p> <p>(개인차량을 우선이용 권고 없을 경우에만 구청차량 이용)</p>
--	--	--	---

■ 해외입국자 입국시 이동관련 주의사항 안내

*출처:중앙방역대책본부

구 분	내 용
해외에서 항공기 탑승 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, 탑승하지 않기 ○ 배웅객이 오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○ 항공기 탑승 시간에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하여 혼잡 피하기 ○ 항공기 예약 및 발권은 가능하다면 무인기기 이용하기
항공기 탑승 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공기 내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하기 ☞ 기내식 등 음식섭취 시에는 대화자제 ○ 화장실 등 항공기 내 공용 공간 사용 전후 손소독 하기
국내 입국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시 마스크 착용하기 ○ 개인수하물 찾기 전, 후 손소독 하기 ○ 이동 시에는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이용하기 ☞ 지자체 제공 수단, 전용 버스열차택시 등 이용하고 손소독 철저, 음식섭취 및 대화 자제 ☞ 자차 이동 시 맞이객과 악수 등 신체접촉은 피하고, 뒷좌석에 앉는 등 거리두기 * 맞이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, 이동 중 주기적으로 차량 환기 실시 ○ 거주지 도착 후에는 짐가방 등 소지품 표면 소독 실시 * 입국자 탑승 차량 좌석과 손잡이 등 손이 닿은 곳의 소독 실시 ○ 격리통지서 발급 시 안내된 격리수칙(자가, 시설 등)철저히 준수하기

■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제도 12월 10일부터 시행

*출처: 중앙방역대책본부

구 분	내 용
도입목적	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사회·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
신고 시기	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'에 따른 '관심' 이상의 위기정보 발령 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'주의'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
단기체류 외국인의 신고의무	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 (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)
숙박업자의 신고의무	외국인이 숙박할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내에 투숙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(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)
신고방법	숙박업자는 2021년 상반기 중 별도 숙박신고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 별지 서식에 맞춘 투숙 외국인 정보를 이메일, 전화, 팩스 등을 활용해 관할지방 출입국·외국인고나서에 신고

*경보단계 : '관심', '주의', '경계', '심각'

**관광,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 기간 동안 머무는 체류 외국인

***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,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, 외국인 관광 도심민박업,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자

*자세한 사항은 하이코리아 (www.hikorea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■ 코로나-19 양성 자가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(입국일 기준, 1.1~31까지)

*출처: 중앙방역대책본부

[171개 국가 대상]

전액지원 국가(66개국)

-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 지원

가봉, 감비아, 그리스, 기니, 기니비사우, 나이지리아, 노르웨이, 뉴질랜드, 니카라과, **대만**, 동티모르, 라이베리아, **러시아**, 레바논, 루마니아, 리비아, 리투아니아, **말레이시아**, 말리, 모로코, 모잠비크, 몬테네그로, **몽골**, 미얀마, 베네수엘라, 베냉, 부탄, 브루나이, **사우디아라비아**, 사이프러스, 상투메 프린시페, 세네갈, 세르비아, 수단, 슬로바키아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아르메니아, 알바니아, 알제리, 에스와티니, 에스토니아, 에티오피아, 엘살바도르, 영국, 예멘, 우간다, **우즈베키스탄**, 이탈리아, 인도, **일본**, 적도기니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차드, 카메룬, 카보베르데, **카자흐스탄**, 카타르, **키르기스공화국**, 캐나다, **쿠웨이트**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나마, 포르투갈, 폴란드, 호주

일부지원 국가(57개국)

- 격리실 입원료(병실료) 지원(식비, 치료비 등 미지원)

가이아나, 과테말라, 니제르, 덴마크, 독일, 라트비아, 룩셈부르크, 마카오, 멕시코, 모리셔스, 몰도바, 몰디브, 민주콩고, 바레인, 방글라데시, 벨기에, 벨라루스, 부룬디, 부르키나파소, 북마케도니아,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, 불가리아, 볼리비아, 브라질, 스리랑카, 스웨덴, 스페인, 슬로베니아, 시리아, 아르헨티나, 아제르바이잔, 아프가니스탄, 안도라, 앙골라, 에콰도르, 오만, 오스트리아, 요르단, 우크라이나, 이란, **인도네시아**, 자메이카, **중국**, 체코, 칠레, 코스타리카, 코트디부아르, 크로아티아, 타지키스탄, 터키, 파라과이, 파키스탄, 페루, **프랑스**, 핀란드, **필리핀**, **홍콩**

미지원 국가(48개국)

-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비용 전액 본인 부담

가나, 나미비아, 남수단, 남아공, 네덜란드, 네팔, 도미니카, 라오스, 르완다, 리히텐슈타인, 마다가스카르, 말리위, 모리타니아, 몰타, **미국**, 바하마, **베트남**, 벨리즈, 세인트키츠네비스, 스위스, 시에라리온, **싱가포르**, **아랍에미리트**, 아이티, 안티가바부다, 온두라스, 우루과이, 이라크, 이스라엘, 이집트, 잠비아, 짐바브웨, **캄보디아**, 케냐, 코모로, 콜롬비아, 탄자니아, **태국**, 토고, 튀니지, 파푸아뉴기니, 피지공화국, 헝가리, 바누아투, 솔로몬제도, 투르크메니스탄, 수리남, 조지아

■ 외국인 재입국허가제도 변경

*출처:출입국관리사무소

구 분	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
현행	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, 진단면제서를 제출
변경	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 -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 * 재입국허가 시 신청이 가능했던 '재입국허가자의 진단면제서' 신청 불가
시행일	2021.1.8.(금) 00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2021.1.8.(금) 이전에 재입국허가(재입국허가 진단면제 허가자 포함)를 받은 외국인도 21.1.8 (금) 00시 이후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.